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43호
2026. 9. 11.(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고시 제2026-70호) 1

공 고(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39호)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44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46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47호) 39
-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공고 제2026-948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53호) 50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56호) 58
- 2026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추가 선발 모집공고(공고 제2026-963호) 60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공고 제2026-965호) 6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66호) 69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	
			사 유	고시일
상서동 329-9	상서당1길 34-1	건물신축	윗마을서당이라는웃서당,상서당 자연마을명에서유래	2010. 04. 20.
오정동 318-5	오정로9번길 19	건물신축	오정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9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2010. 04. 20.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상서당1길 34-1	상서동 329-9	2026. 9. 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오정로9번길 19	오정동 318-5	2026. 9. 1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 시 동일한 우선순위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 입찰가격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입찰가격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어르신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전화: 042-608-6801, FAX: 042-608-3833, E-mail: yunhee893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장윤희(전화: 042-608-68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 시 동일한 우선순위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 입찰가격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입찰가격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26. 00. 00. ~ 2026.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입찰가격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
상자를 결정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u>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계약) ① ----- ----- -- <u>별표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u>입찰가격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입찰가격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

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

(전화: 042-608-6817, FAX: 042-608-3834, E-mail: phe489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박혜은
(전화: 042-608-6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 기후 위기대응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세 감면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등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1항).

나.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5조의3).

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인상함(안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전화: 042-608-6622, FAX: 042-608-3824, E-mail: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3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② (생략)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u>2029년 12월 3 1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 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 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 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 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목적으로 <u>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u>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 ----- ----- ----- ----- ----- <u>202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는 부동산과</u> ----- ----- ----- -----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
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

② -----

2029년 12월 31
일-----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조의3(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illegible]

제5조의3(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
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2028년 12월 31일 -----
----- . -----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u>1,000원</u> ② (생 략)	-----. 1. ----- ----- <u>800원</u> 2. ----- ----- <u>1,600원</u> ②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 ③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 ⑦ (생략)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 5. (생략)

⑨ (생략)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5. (생략)

6.“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생략)

8.“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

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 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고, 구기 및 휘장 등 관련 별표를 현행화하여 상징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상징물 구기 디자인을 현행화함(안 별표 1).
- 나. 상징물 휘장 디자인을 현행화함(안 별표 3).
- 다.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함(안 별표 5).
- 라. 상징물 캐릭터 디자인을 변경함(안 별표 6).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미디어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미디어홍보과
(전화: 042-608-6531, FAX: 042-608-3830, E-mail: ptking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디어홍보과 담당자 김선영(전화: 042-608-65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 덕 구 기(제3조제1호 관련)



■ 바탕 : 흰색 마크 : 좌에서 우로 주황색 , 녹색 , 청색 글씨 : 진청색

[별표 3]

회 장(제3조제3호 관련)



[별표 5]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5호 관련)

○ 브랜드 슬로건: 든든 대덕, 국민이 중심입니다

The image shows the brand slogan "든든 대덕, 국민이 중심입니다" (Dundun Daedeok, Citizens are the center) written in a stylized, bold, blue font. The text is contained within a thin black rectangular border.

[별표 6]

캐 릿 터(제3조제6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덕구	더기더기

2. 캐릭터 설명

가. 덕구

대덕구 명칭을 반영한 캐릭터로,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함.

나. 더기더기

오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유쾌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된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 가. 구 역 명: 연축주공 재건축정비구역
- 나. 사업명칭: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 다.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102번지 일원
- 라. 면 적: 43,525㎡

2. 정비계획 내용

- 가. 정비계획 및 면적(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43,525	100.0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25	100.0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43,525	100.0	
택 지	소 계	38,507	88.5	
	공동주택용지	38,507	88.5	
정비기반시설	소 계	5,018	11.5	
	도 로	1,973	4.5	
	어린이공원	2,801	6.4	
	공공공지	244	0.6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공람 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람 도서 참조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람 도서 참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공람 도서 참조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공람 도서 참조

3. 공람기간 : 2026. 9. 11.(금) ~ 2026. 10. 16.(금) (30일 이상)

4. 공람내용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에 관한 사항

5.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가.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 4층) ☎ 042)608-5945, FAX 042)608-3841

나. 연축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 042)621-979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66, 연축주공아파트 상가동 202호

6.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6. 9. 17.(목) 14:00 ~ 16:00

나. 장 소: 회덕침례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195-1)

다. 참석대상: 연축주공 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7.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장소에서 공람 도서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의 범위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전화: 042-608-6893, FAX: 042-608-3835, E-mail: riverahn@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과 담당자 안가람 (전화: 042-608-68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10호”를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 15의2제10호</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별표 15의2</u> --- ----- -----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 15의2제9호</u> 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u>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u> (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와 같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 ----- <u>별표 15의2제10호</u> -----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2012. 5. 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2019. 11. 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장동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발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대상: 장동3지구 토지소유자 4명
2.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9. 25. (14일간)
3. 공고장소: 대덕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문의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조서

연번	토지소재		소유자 정보		발송구분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장동	136-1	송*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가길 21-(사당동)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장동	246	송*섭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9*, 10*동 60*호(가양동, 아침마을)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장동	239-2	송*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27*번안길 26-(장동)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장동	333 333-1	박*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번길 2*, 10*동 120*호 (와동, 대덕브라운스톤아파트)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026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추가 선발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시급직)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선발인원: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4명(일 2~3시간)

2. 자격기준 및 임무

가. 자격기준

1) 근로자 공통

① 공고일 기간 내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②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자

※ 중증 장애 또는 중증 환자로 청소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외

※ 휠체어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자, 고혈압, 당뇨병, 폐질환, 심질환자 등 단,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처방을 받아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나. 임무

1) 근로자 공통

① 청소방법: 1일 2~3시간 수시 청소 / 9월 3시간, 10월~12월 2시간

└ 3시간 근무 시 9:00~10:00, 13:00~14:00, 17:00~18:00 청소

└ 2시간 근무 시 9:00~10:00, 14:00~15:00 청소

※ 세부 근무시간 변경 원할 경우, 사전 협의 후 변경 가능

② 화장실 내·외 청소 및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휴지통 등) 비치

③ 소·대변기, 세면기 등 위생 설비 막힘 즉시 수선

- ④ 구청 행사 시 임시 설치되는 공원 내 간이화장실의 청소
- ⑤ 화장실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등 청결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⑥ 관리책임자 표지판 및 일일점검표 갱신
- ⑦ 타 근무자 휴무에 따른 휴무 근로자 공중화장실 상호 대체근로 실시

예시) 월, 화 휴무 근로자와 수, 목 휴무 근로자 간 상호 대체근로 수행

다. 근무장소

- 한마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 법동 191-2번지
- 법동소류지(1) 공중화장실 / 법동 140-1번지
- 여태말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 목상동 174번지
- 오정대화근린공원(1) 공중화장실 / 대화동 254-56번지

3. 지원신청 및 선발 절차

가. 지원신청

- ① 접수처: 대덕구청 공원녹지과(별관 4층)
- ②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로 희망자 본인이 직접 접수
 - ※ 전화, 우편, FAX 및 대리 접수 등 불가
 - ※ 공원녹지과에서 동일 기간에 모집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나. 선발절차

- ①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② 결격사유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 ※ 동점자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2조제3항에 의거, 취약계층·세대주 여부·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 단, 권역·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희망 지원자가 적은 지역의 경우 예외를 둠
 - ※ 단, 배정된 청소 지역 사역 거부 시 중도 탈락할 수 있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2조제1항 <채용시험 가점기준> 반영

4.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필수) / 접수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

- 1) 참여신청서(구청 홈페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2) 주민등록등본(최근 1년 이내 발급) 1부.
- 3) 건강진단서(모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1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 동의서 1부.
- 5) 신분증 사본 1부.

나. 제출서류(선택)

- 1)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공원 유지관리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분야 제외)
- 2)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4) 관련분야 유공 표창장 1부

5. 선발 일정 및 장소

가. 선발 일정

- 1) 공고기간: 2026. 9. 11.(금) ~ 2026. 9. 16.(수)
- 2) 접수기간: 2026. 9. 15.(화) ~ 2026. 9. 16.(수) 10:00~17:00
- 3) 서류심사: 2026. 9. 17.(목) 15:00 이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 4) 면접일시: 2026. 9. 18.(금) 14:00 ~ 17:00 예정
- 5) 발표일: 2026. 9. 21.(월) 15:00 이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나. 교부 및 접수 장소

- 1) 교 부 처: 대덕구청 별관 4층 공원녹지과(042-608-5134), 동 행정복지센터
- 2) 접 수 처: 대덕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42-608-5134) / 별관 4층

6. 근로자의 처우

가. 근무형태 / 2026년 대덕구 생활임금(시급) 12,050원

- 1) 주 5일제(토·일 근무, 주중 2일 휴무) / 1일 2~3시간 근무기준
- 2) 약 771,200원/월(1일 3시간 근무), 5~9월(5개월)
- 3) 약 482,000원/월(1일 2시간 근무), 1~4월·10월~12월(7개월)
※ 한 달은 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

- 1) 근로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무단결근, 민원 야기, 청소 불량 등 불성실 근로자는 계약기간 도래 전에도 중도 해약함
- 2)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 3) 공개채용의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인 것으로 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음
- 4) 이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5)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 및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 6)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접수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7)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 서식)하는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최종합격자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제출된 타인의 서류와 심사내용은 반환하거나 일체 공개하지 않음

기간제근로자(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작성하지 말것	근무형태	일 2~3시간		
성명		(남 , 여)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 전화번호	- -	
취약계층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호수급자 ☐ *증명자료 제출 필요	세대주	해당 ☐ 해당없음 ☐	세대인원	명
화장실분야 종사경력	() 년 () 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필요				
유공자	*유공 자격 증명 자료 제출 필요				
청소 가능 구역	- 한마음어린이공원, 범동소류지(1), 여태말어린이공원, 오정대화근린공원(1) 중 청소 가능한 공원 기입 1. 2. *청소 가능 구역 기재 후, 배치 거부 시 결격 사유가 됨				
이동수단 소유 여부 *서류접수에 반영, 차량등록증 제출 필요		자동차, 오토바이, 도보,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6년 9월 일

대덕구청장 귀하

응 시 자 각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선발 실기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체력검정 응시를 포기해야 함을 고지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력검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실기검정 진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65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제 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10. 10. (30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등록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덕구 제 2013-04호	한국지엠(주) 대전정비기술센터 (VILLARREAL GONZALEZ HECTOR RAUL)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2번길 137 (대화동)	상호	한국지엠(주) 대전서비스센터	<u>한국지엠(주)</u> <u>대전정비기술센터</u>

※ 최초등록일: 2013. 8. 19.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66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5.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시송달 조서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305)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